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613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6133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730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두리, 김선일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태광, 박선정

변론 종결 2023. 5. 19.

판결 선고 2023. 7. 7.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730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21.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21.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부터 2015. 말경까지 'C' 상호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D은 원고의 언니로서 2006. 1.부터 2015. 7. 30.까지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4. 3. 7.부터 2015. 7. 7.까지 아래 표 기재 금액의 돈, 총 84,100,000원을 C 사업용 계좌들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위 84,100,00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30,000,000원의 차액을 "이 사건 청구금"이라 한다, 다만 순번 9번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수표교부 방식이다).

1	2014. 3. 7.	원고	3,000,000원	피고	갑 제5호증
2	2014. 3. 7.	원고	3,300,000원	피고	갑 제5호증
3	2014. 4. 1.	원고	6,300,000원	피고	갑 제5호증
4	2014. 4. 22.	원고	6,300,000원	피고	갑 제5호증
5	2014. 8. 7.	원고	300,000원	피고	갑 제5호증
6	2015. 3. 24.	원고	30,000,000원	피고	갑 제1호증
7	2015. 4. 28.~5. 26.	원고	600,000원	피고	갑 제1호증
8	2015. 5. 27.~7. 1.	원고	9,300,000원	피고	갑 제1호증

1	2014. 3. 7.	원고	3,000,000원	피고	갑 제5호증
9	2015. 7. 7.	원고	25,000,000원	피고	갑 제4호증
計		84,1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C)로부터 돈을 수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청구금을 횡령 내지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툼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 보아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청구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 6, 9, 11, 15, 17, 18, 26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많은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 순번1)1) 내지 4번 및 6번 지급액(합계: 48,900,000원)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순번 1 내지 4번

원고는 2014. 1. 29. C의 거래처인 'E'의 대표자 F로부터 액면금 30,000,000원 수표의 할인을 요청받아 D에게 위 수표의 할인대금으로 이자 10%를 공제한 뒤 현금 27,000,000원을 F와 원고 등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원고의 요청대로 27,00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한 뒤 F로부터 위 수표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3. 초경 D에게 G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수표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D은 원고에게 위 수표 액면금 상당액인 30,000,000원을 2014. 3.부터 2014. 7.까지, 이자 월 1%,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대여"라 한다). 이후 D은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은 피고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원고가 D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매월 6,3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4번은 이러한 경위로 입금된 것으로서 원고의 D에 대한 변제 내역 일부에 해당한다.

(나) 순번 6번

원고는 2014. 10. 13. C의 거래처인 'H' 대표자 I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아 또 다른 C의 거래처인 'J'에 지급하고 현금할인을 받았는데, 위 어음 만기일인 2014. 12. 10. 어음금을 구하지 못하여 2014. 12. 11.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제2대여"라 한다). 이후 D은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은 피고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원고가 D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순번 6번은 이러한 경위로 입금된 것으로서 원고의 D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D이 원고에게 2014. 3.2) 제1대여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변제금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D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변제금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 D은 그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 29. 'E'의 직원인 K에게 10,000,000원, C의 또 다른 거래처인 L에게 6,000,000원, 2014. 2. 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을 제9호증).

○ C 장부에는 1/29에 잔디로3) 에 3,000만 원 수표를 할인해주고, K에게 1,000만 원, L에 700만 원4) , 2/3 원고5) 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D 3,000만원 줘야함(5개월로 갈라서 줌)(B)" 및 "M6) 가 쓰고 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을 제10호증).

○ C 수표노트에는 '1/29 액면금 3,000만 원 수표번호 N을 'E'에서 할인 요청하였고 이 중 1,000만 원은 K에게 보내고, 300만 원은 이자로 한다', '위 수표를 O 사장7) 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위 수표를 "7/1 회수해서 가져감"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 옆에 F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다(을 제11호증, 8면).

○ 피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D이 원고에게 2014. 12. 11. 제2대여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변제금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D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변제금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 D은 2014. 12. 11. 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1호증).

○ C 장부에는 '12/11 J 수표(12/108) I 것)를 막느라 D이 원고의 기업은행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고 I의 수표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을 제15호증).

○ C 수표노트에는 "10/13 P (12/109)) =>J 3000= 회수 후 B" 및 "12/10 P(3/1210))=> B3000"이라고 기재되어있다(을제11호증, 22면-23면).

○ 피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D은 자매로서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Q빌딩에 공동투자하며 오랜 기간동안 원고나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수많은 금전 거래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이고 C의 장부에는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사업이나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어도 그것이 크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라) 위 인정 사실들의 주된 증거인 C 장부(을 제26호증)는 비록 보고문서에 불과하나 D이 알 수 없는 C의 거래처 정보와 계좌정보, 거래처 사장들의 이름과 서명 등이 기재 되어있는 점, 거래처 사장들의 수표 일련번호가 기재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시간 순서대로 작성되어온 점, 장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의 대여 일자를 전후하여 D 명의의 계좌에 C의 현금 매출금이 입금되었고, 원고와 R11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이상의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의 출처는 C의 매출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D의 횡령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D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전체가 이 사건 사업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액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는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사업 매장의 현금 매출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현금 입금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D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입금액 모두를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을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현금 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D이 운영하는 S점의 사업자 통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S점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및 Q 빌딩 등에 공동 투자하며 오랜 기간 채권 채무 관계를 맺어온바, 원고와 R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C의 매출액으로 볼 수도 없고, 그와 무관한 원인으로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 9번 지급액(25,000,000원)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으로부터 2015. 3. 24. 30,000,000원을 차용한 직후 D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2015. 7. 1. 5,000,000원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2015. 7. 7. 25,000,000원은 수표교부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D이

2015. 7. 7. C에 들어온 액면금 5,000,000원 수표 5장을 가져갔다가 2015. 10. 30. 이를 현금화하여 이자 명목의 돈 250,000원과 함께 피고 계좌로 보내준 것이다. 피고 입장에서는 위 30,000,000원 차용금을 일시 원고가 사용하게 해 주었다가 다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D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위 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이후 원고로부터 이 금액 상당액을 다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피고가 2015. 7. 1. 5,000,000원은 원고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았고, 이후 나머지 원금 25,000,000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바, 아래는 25,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 원고는 2015. 3.경 D에게 수표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 D이 피고에게 2015. 3. 24.자 차용금 30,000,000원(순번 6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는 것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피고가 이를 승낙한 뒤 2015. 3. 31.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R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C 수표 노트에 '7/7 수표번호 T부터 U까지 500만 원의 수표 5장을 B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수표 T부터 V번의 뒷면에는 D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있다.

○ D이 2015. 10. 30.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2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인정한 사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D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성훈

판사권순호

판사권기만

- 1) 위 기초사실 기재 표 '번호'열의 순번을 의미한다. 이하 순번이라고만 하여도 같다.
- 2) 피고는 2014. 1. 29.을 대여일로 특정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가 D으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의 수표를 빌린 날은 2014. 3월경이므로 위 날짜를 제1대여의 대여일로 본다.
- 3) 'E'을 의미한다.
- 4) D은 계좌이체한 600만원 이외에 10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한다.
- 5)을 제10호증에는 "2/3 1000만원 M"로 기재되어 있으나, M는 원고의 예명을 의미하므로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 6) 원고의 예명이다.
- 7) G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8)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9)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0) 피고는 1이 수표의 만기를 3/12로 연장해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연장된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1) 원고의 전남편으로, 원고와 함께 C를 운영하였다. 원고와는 2018년 이혼하였다.